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환경성적표지 인증 준비 지원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521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환경성적표지 인증 준비 지원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2
※ 참고자료	7
1.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개요	7
2.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8

I. 제안경위

2024년 12월 16일 어기구위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임. 현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현행법 제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등을 근거로 기술개발 자금 지원, 시설·장비 지원 및 시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등을 실행하고 있으나, 인증 준비 단계에서의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환경성적 가(假)산정,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과, 지원환경성표지인증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환경성적표지 인증 준비 지원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개정안은 ①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른 환경성적 가(假)산정,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환경성 개선방안 검토 등)과 ②환경성적표지 인증 대상이 되는 재료와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 및 실태조사 등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0조의2(환경성적표지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른 환경성적 가(假)산정 2.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3. 환경성 개선방안 검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현행	개정안
	위하여 기초연구·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는 소비자 주도의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의 환경성을 계량화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¹⁾.

[환경성적표지 인증 현황]

(2024.12. 기준, 단위 : 기업 수, 제품 수)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기업수	266	323	396	457	561
환경성적표지 (저탄소제품)	1,292 (177)	1,455 (294)	1,867 (492)	2,335 (872)	2,789 (1,101)

※ 출처: 환경부

-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한다.
-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재료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환경부고시 제2022-155호)]

제3조(환경성적표지의 표시내용) ①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의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자원발자국**: 광물, 화석연료 등의 개발 및 소비로 인한 지구 자원에 미치는 영향(폐기물 발생 및 자원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결과
 2. **탄소발자국**: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물질이 대기로 배출되어 지구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결과
 3. **오존층영향**: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이 대기로 배출되어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결과
 4. **산성비**: 대기 중의 산성화물질(NO_x , SO_x)이 빗물에 녹아 지표로 떨어지면서 인간활동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결과
 5. **부영양화**: 대기, 수계, 토양에 질소, 인 등 유기물질의 농도가 과다해짐에 따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결과
 6. **광화학 스모그**: 인간 활동으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빛과 반응하여 생성된 지표면의 오염물질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결과
 7. **물발자국**: 인간 활동이 수질, 수량 등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결과
- ② 환경성적표지의 탄소발자국 산정 결과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의2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저탄소제품으로 표시한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임의 인증제도이므로,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²⁾,

인증 신청을 위해서는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른 환경성적을 작성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므로 환경성적표지 인증의 확대를 위해 컨설팅 등 인증준비단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환경부장관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게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른 환경성적 가(假)산정, 대상 제품군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②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환경성 개선방안 검토 등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②환경성적표지 인증 대상이 되는 재료와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3),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확대와 환경산업 및 녹색성장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9조4)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례가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 환경부는 ‘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범위가 넓고 컨설팅 비용을 지원 받은 후 인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인증을 받은 후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5).

3)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안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초연구·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6억원(연평균 1억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음.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①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②~⑤ (생략)

⑥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제품의 생산 조건이나 품질에 대한 심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에게 제3항에 따른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제15조제6항에 따라 시험연구원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으로부터 공장에 대한 심사 또는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는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18조에 따른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참고로, 환경부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신청서 작성을 위해 제출하였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참고자료 2.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

문 의 처

02)6788-5541

※ 참고자료

1.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개요

□ 제도 개요

- **(목적)** 소비자에게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주도의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체계 구축 기여
-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 정의**
 - **(환경성적표지)** 제품 및 서비스의 전과정(원료채취→제조→수송→사용→폐기)에서 발생한 환경성 정보를 7대 범주*별로 계량화하여 제품에 표시
 - * 자원발자국, 탄소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물발자국
 - **(저탄소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중 원료·연료 대체나 공정·효율 개선을 통해 종전보다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저탄소제품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



(7대 범주별 환경성 정보 표시)

저탄소제품 인증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표시)

-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환경부고시)
- **(시행기간/주체)** '01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인증기관, '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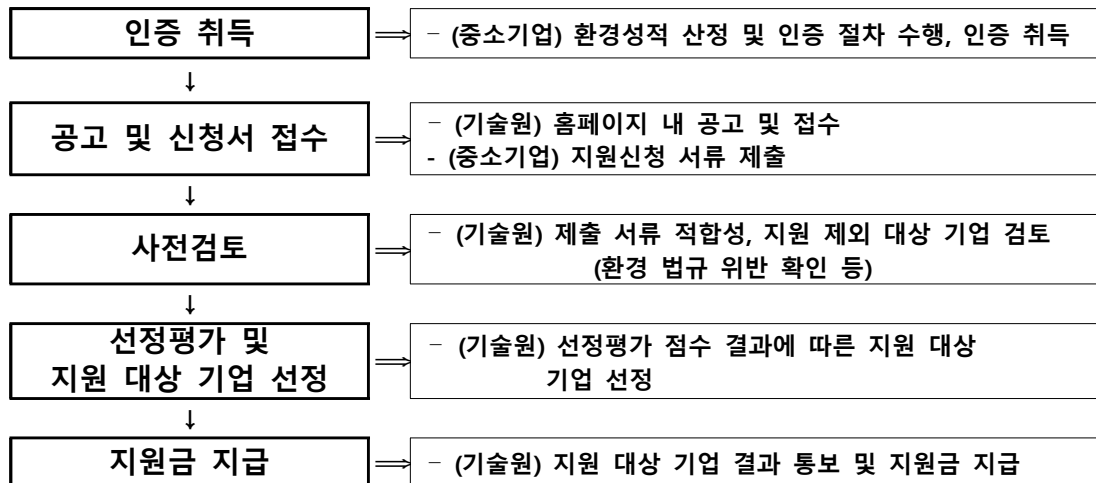
□ 인증대상 및 방법

- **(인증대상)** 생산재, 비내구재, 내구재(에너지사용·에너지미사용), 서비스
 - ※ 의료기기 및 의약품,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제외
- **(작성지침)** 총 59개('24.5월 고시 개정 기준)
 - ※ 공통지침(3), 개별지침(25), 에너지 사용제품 사용 시나리오(31개)
- **(심사방법)**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심의의결을 통한 인증 부여
 - ※ (인증절차) 신청 → 서류심사·현장심사 → 종합심사 → 심의위원회 결과통보 → 사용계획서 승인 → 인증서 교부
- **(인증기간)** 3년(적합성 여부 확인을 통해 연장 가능)

2.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 사업 개요

- (사업명)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11년~ 계속)
- (사업내용) 중소기업 등의 환경성적 산정 컨설팅 비용 사후 지원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 최초 인증 제품 5백만원, 파생 및 갱신 인증 제품 2.5백만원
 - ※ 제품당 최대 지원 금액으로 신청금액이 최대 금액 미만이면 전액 지원 (제품 기준)
- (수행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원절차) 기술원이 공고 및 지원 신청 받아 검토 후 지급



※ 부도·파산 기업, 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업 등의 경우 미지급

□ 지원 실적(최근 3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계	'22년	'23년	'24년	'25년 예산
중소기업수	237	70	76	91	-
지원받은 인증 제품수	461	135	140	186	-
지원금액	1,200	350	399	451	450
제품당 평균 지원금액	2.6	2.6	2.9	2.4	-